

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(안)

의안 번호	58
----------	----

제작년월일 : 1994. 4. 20

발 의 자 : 전병운 의원의 6일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사가 구정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가.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대상

- 구청장
- 복구청장
- 총무국장
- 재무국장
- 시민생활국장
- 도시정비국장
- 건설국장
- 보건소장

나. 출석일자 : '96. 4. 29(월)~4. 30(화)

3. 관련법규

가. 지방자치법 제37조

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

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